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30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10905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4. 9. 26.

판 결 선 고 2014. 11. 4.

주 문

1. 피고가 2013.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B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복지센터'라 한다)는 2009.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30

8.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신고를 마쳐 지정의제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노인 등 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및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한 종업원 수가 매월 50인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8. 10.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1년 8월분부터 12월분까지 및 2013년 1월분부터 5월분까지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합계 1,929,6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9. 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급여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복지센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30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복지센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사회복지법인등 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열거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에 의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1] 제22조 제1항 본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은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복지센터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본

1) 이 사건 처분 중 2011년 8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부과처분에 대한 근거 법률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이고, 2013년 1월분부터 5월분까지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부과처분에 대한 근거 법률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이나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30

문의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구 사회복지사업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회복지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부분은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만을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어법상 자연스러운 점, ②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서 정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부분이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부분만이 아니라 그 뒤의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 부분을 함께 수식한다고 본다면, 앞에서 "복지에 관한 사업"이 언급되었음에도 뒤에서 또다시 "각종 복지사업"이 언급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 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 형식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부분은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만을 수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은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30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②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 ③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나열하고 있는 각 목의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이 사건 센터는 사회복지사업 중 재가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복지센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본문의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복지센터에 대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것인지를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 단서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3. 14. 대통령령 제25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은 "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6.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30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호 마목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복지센터에 대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어서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4) 따라서 이 사건 복지센터에 대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주영

판사 박필종

판사 허익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30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1. 2011년 8월 귀속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174,060원(가산세 포함)
2. 2011년 9월 귀속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210,660원(가산세 포함)
3. 2011년 10월 귀속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186,650원(가산세 포함)
4. 2011년 11월 귀속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189,290원(가산세 포함)
5. 2011년 12월 귀속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192,250원(가산세 포함)
6. 2013년 1월 귀속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196,110원(가산세 포함)
7. 2013년 2월 귀속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191,050원(가산세 포함)
8. 2013년 3월 귀속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199,540원(가산세 포함)
9. 2013년 4월 귀속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199,120원(가산세 포함)
10. 2013년 5월 귀속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190,930원(가산세 포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30

별지 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면제)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30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3. 14. 대통령령 제25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 구 사회복지사업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30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차. 「정신보건법」 제3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타. 「입양특례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30

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